

의안번호	2210790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 7. 11.
추계번호	25C3146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5조의2(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)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(기초연금액의 감액)	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때 적용하는 20% 감액을 폐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의2(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(기초연금액의 감액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자에게 2026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,510원이며, 2026년 기준연금액이 현행 추이와 같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경우 40만원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¹⁾

- 그러나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은 65세 이상 개인 및 부부(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)의 소득과 자산만 반영된 것이므로, 현 시점에서는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여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불명확함
 - 안 제5조의2제1항은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할 것인지, 또는 몇인 가구 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음
 - 현재 기초연금은 개인 및 부부의 소득·자산만 고려하므로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는 가구원수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어려움
 - 또한,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 합산의 소득·자산만 반영된 소득 인정액 자료만 있어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없으므로,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한 2026년 기준연금액이 4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2025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.8%가 되어야 하므로 이는 현실적이지 않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